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연재 일정 안내]

연재일	목 차
2006. 4월호	I. 연구목적
	II.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III. 판례분석을 통해 본 분리관찰 가능 여부(요약)
2006. 5월호	IV. 분리관찰 가능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
2006. 6·7월호	
2006. 8월호	V. 결론



- 두 단어가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알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쉬운 단어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기본어휘인 영어사전 상 별표 2개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1)

- 이 사건 출원상표 : Performance
- 인용상표 : PERFORMANCEVIEW
- 관련판결요지(94후1350, 1541)

“PERFORMANCE”와 “VIEW”라는 두 단어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PERFORMANCE”만으로 약칭되어질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 사례2)

- 이 사건 출원상표 : Apple
- 인용상표 : APPLEBOX
- 관련판결요지(90후1741, 1834)

인용서비스표는 사과, 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APPLE”과 상자, 선물 등을 뜻하는 “BOX”라는 두 개의 쉬운 단어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App

01 제 명 상표3심사팀장

현재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상표3심사팀장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 교육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le”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
사례3)

이 사건 출원상표 : SMARTSKETCH

○ 인용상표 : SKETCH

○ 관련판결요지(2000후4992)

“SMART”와 “SKECH”라는 두 단어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으로 보아 “SKETCH”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일부의 호칭이 동일

사례4)

○ 이 사건 출원상표 : LOSTLEGEND

○ 인용상표 : LEGEND

○ 관련판결요지(98후652)

우리나라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해 볼 때 “LOST”와 “LEGEND”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어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 그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1)

○ 이건 등록상표 : HYDRAMATT

○ 인용상표 : MATT

○ 관련판결요지(99후642)

“HYDRAMATT”라는 영어단어는 없고 그 중 앞부분인 “hydra”는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퇴치한 늑에 사는 머리가 아홉인 뱀, 근절키 어려운 재해, 강장동물의 일종인 히드라”라는 뜻을, 뒷부분인 “matt”는 “광택이 없는, 윤을 없앤, 반들거리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실, 위 두 단어에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각 교과과정에 나오는 단어를 나타내는 “*” 표시가 한 개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학교까지의 교과과정에서도 나오지 않는 단어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일부 영한사전에는 “matt”에만 위와 같은 뜻이 기재되어 있고 아예 “matt”라는 단어는 등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과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

논 단

장품의 일반수요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일반적인 영어수준에 비추어 보면, “hydra” 와 “matt”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보아야만,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화장품의 일반수요자들이 “hydra” 와 “matt”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들이 연이어 표기되어 있는 “HYDRAMATT”를 “HYDRA” 와 “MATT”로 분리하여 인식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고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 할 것이다.

사례2)

- 이 사건 출원상표 : HANSGROHE
- 인용상표 : GROHE
- 관련판결요지(90후1147)

이 사건 출원상표는 “HANS” 와 “GROHE”가 결합한 것임을 알기 어렵고 “HANS”를 생략한 채 “GROHE” 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

■ 기타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1) 식당업 등과 같이 서비스업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와 결합한 표장
인 경우

- 이건 등록서비스표 : [그림 12]
- 선등록 서비스표 : [그림 13]
- 관련판결요지(2004허 340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문자와 결합되어 있는 배를 상징하는 도형 ‘[그림 14]’은 식별력이 약하므로 이 부분’으로 호칭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자 부분인 ‘배밭고을’ 중 ‘배밭’은 ‘배가 자라는 밭(땅)’ 을 의미하고 ‘고을’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또는 ‘마을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 을 의미하므로 ‘배밭고을’은 ‘배밭이 있는 마을(지역)’ 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식당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은 그 업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사용하는 서비스표장 또한 동

● 배밭고을

[그림12]



[그림13]



[그림14]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일한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허다하여 일반수요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그 표장을 전체로 호칭하지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하지는 않을 것인 점, 식당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므로 ‘배밭고을’ 역시 단순히 ‘배밭’ 이란 관념보다는 장소를 나타내는 ‘고을’을 붙여 ‘배밭고을’ 이란 일체화된 단어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을 일체로 하여 ‘배밭고을’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배를 상징하는 도형 [그림 15] 좌우에 ‘그림 16’, [그림 17] 가 결합되어 있으나 ‘갈비전문’ 또는 ‘갈비’는 서비스업 종을 표시하는 혼한 낱말이므로 나머지 문자부분인 ‘태능배밭’으로 호칭될 것인데, 여기에서 ‘태능’은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다소 약하므로 나머지 ‘배밭’으로만 호칭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한식점 경영업’과 같은 지정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음식점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체로 일부 문자만으로는 약칭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배밭’으로 약칭된다기보다는 ‘태능배밭’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2) 접두어와 형용사의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형용사가 식별력이 약하

다고 한 경우

- 이 사건 출원상표 : BIOFINE
- 선등록상표 : INTERFINE
- 관련판결요지(2005허2694)

이 사건 출원상표가 ‘BIO’ 와 ‘FINE’ 이라는 두 영어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접두어와 형용사가 결합하여 전체가 알파벳 7자로 구성된 단어에서, 접두어로 사용된 ‘BIO’ 를 다시 분리하여 “BIO” 와 “FINE” 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FINE’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형용사로 사용되어 ‘좋은, 훌륭한, 질하는, 우수한, 탁월한’ 등의 뜻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 ‘FINE’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15]



[그림 16]

태능 배밭 강원

[그림 17]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사례3) 접두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이 사건 출원상표 : uniPOS
- 인용서비스표 : POS
- 관련판결요지(2000허1634)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영문자 “uni” 와 “POS”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어이고(“uni”는 소문자이고 “POS”는 대문자여서 외관상 분리관찰의 여지가 전혀 없지 아니 하나, 소문자 · 대문자라는 글자의 크기 차이만으로는 분리관찰을 하여야 할 특이한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칭호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4음절에 불과하여 어감상으로 전체적으로 용이하게 호칭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uni”는 ‘하나의’, ‘단일의’ 등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uni” 와 “PO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uni” 와 “POS”로 분리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POS”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를 의미하는 “Point of Sales” 의 약어로 등재되어 있을 뿐더러 국내 일간지와 인터넷상에서도 “POS”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단말기나 판매시점관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 등을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MAGICPOS’, ‘VPOS’, ‘P²POS’, ‘GOLDPOS’ 등 13개의 “POS”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POS”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의 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에 있어서 “POS”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를 “POS” 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화하는 아니한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다고 봄이 상당하다.

V. 결론

앞의 판결례를 통해 알아 본 결과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문자결합상표가 어느 경우에 분리관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두 단어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지 여부

둘째, 두 단어가 결합한 표장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서 구성되었는지 여부

셋째, 두 단어가 결합한 표장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었는지 여부

넷째, 두 단어가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다섯째, 두 단어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문자결합상표가 첫째, 둘째 및 셋째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중 어느 한 요소에 의해 분리관찰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넷째, 다섯째의 요소로 문자결합상표가 구성되어 있다면 위 판단기준, 호칭상의 음절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두 단어가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나 두 단어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결합의 결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두 단어가 쉬운 단어로 구성되고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두 단어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의 기타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판단기준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형태의 사례도 있으므로 많은 판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발·특2006. 8 |